

2022학년도

모두가 으뜸인 행복한 교육 공동체

『교육과정설명회 자료집』



이리송학초등학교



Contents

I . 2022학년도 학사일정 1

II . 학부모 연수 자료 2

1. 청탁금지법 이해 2
2. 불법찬조금 예방 및 학교운동부 청렴도 제고 4
3. 공교육정상화촉진 및 선행교육금지 안내 6
4. 가정에서 인권교육과 학생 인권 보호 8
5. 학부모 정보통신윤리교육 10
6.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 예방 교육 12
7. 생명존중(자살예방)교육 14
8. 코로나 우울 대처하기 17
9. 교육활동 침해 예방 교육 22



2022학년도 교육활동 달력

2022.3							4							5							6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1	2	1	2	3	4	5	6	7				1	2	3	4	
6	7	8	9	10	11	12	3	4	5	6	7	8	9	8	9	10	11	12	13	14	5	6	7	8	9	10	11	
13	14	15	16	17	18	19	10	11	12	13	14	15	16	15	16	17	18	19	20	21	12	13	14	15	16	17	18	
20	21	22	23	24	25	26	17	18	19	20	21	22	23	22	23	24	25	26	27	28	19	20	21	22	23	24	25	
27	28	29	30	31			24	25	26	27	28	29	30	29	30	31					26	27	28	29	30			
*시업식 2일(수) 2~5학년 *입학식 2일(수) 1학년 *친구사랑주간 7일(월) 전학년 *학교폭력예방교육 7일(월) 전학년 *진단평가주간 14일(월) 2~6학년 *성장평가교육 18일(금) 전학년 *교육과정설명회 18일(금) *학부모 상담주간 21일(월) *정보통신윤리교육 29일(화) 전학년 *건강검진 30일(수) 1, 4학년							*인권교육 1일(금) 전학년 *저작권 교육 1일(금) 4학년 *신체검사 4일(월) 2학년 *신체검사 5일(화) 3학년 *진로적성검사 5일(화) 5,6학년 *신체검사 6일(수) 5학년 *신체검사 7일(목) 6학년 *저작권 교육 12일(화) 2학년 *보현장체험학습 13일(수) 1~3학년 *보현장체험학습 14일(목) 4~6학년 *흡연예방교육주간 18일(월)~22일(금) 전학년 *장애인식개선교육 1 20일(수) 전학년 *과학의 달 행사 21일(목) 전학년 *저작권 교육 25일(월) 3, 6학년 *외국어교육체험 25일(월)~26일(화) 5학년 *체육대회 27일(수) 1학년 *독도교육주간 27일(수) 전학년 *체육대회 28일(목) 2학년 *체육대회 29일(금) 3학년							*체육대회 2일(월) 4학년 *체육대회 3일(화) 5학년 *체육대회 4일(수) 6학년 *다꿈주간 9일(월) 전학년 *구강검진 11일(수) 2,3,5,6학년 *아동학대예방교육 19일(목) 전학년 *가정폭력예방교육 19일(목) 전학년 *흡연예방행사 23일(월) 전학년 *학부모수업공개 26일(목) *통일교육주간 31일(화) 전학년							*교통안전교육 2일(목) 1,2학년 *교통안전교육 3일(금) 3,4학년 *수상안전교육 7일(화)~10일(금) 4학년 *수상안전교육 13일(월)~17일(금) 3학년 *소방훈련 22일(수) 전학년 *경제중증교육주간 27일(월) 전학년 *생명존중교육주간 28일(화) 전학년							
*삼일절 1일(화) *대통령선거일 9일(수)														*어린이날 5일(목) *학교장재량휴업일 6일(금)							*지방선거일 1일(수) *현충일 6일(월)							
7							8							9							10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1	2	3	4	5	6					1	2	3							1
3	4	5	6	7	8	9		1	2	3	4	5	6	4	5	6	7	8	9	10	2	3	4	5	6	7	8	
10	11	12	13	14	15	16	7	8	9	10	11	12	13	11	12	13	14	15	16	17	9	10	11	12	13	14	15	
17	18	19	20	21	22	23	14	15	16	17	18	19	20	18	19	20	21	22	23	24	16	17	18	19	20	21	22	
24	25	26	27	28	29	30	21	22	23	24	25	26	27	25	26	27	28	29	30	23	24	25	26	27	28	29		
31							28	29	30	31											30	31						
*나의꿈발표의날 1일(금) 전학년 *건강데이주간 6일(수) 전학년 *1학기 독서행사 8일(금) 전학년 *저작권 교육 11일(월) 5학년 *1학기성장평가통지 19일(화) *여름방학식 26일(화) 4교시 전학년 *여름방학 7.27.(수)~8.25.(목)							*여름개학식 26일(금) 전학년 ◆ 8.26.(금) 2학기 시작일							*친구사랑주간 5일(월) 전학년 *학교폭력예방교육 5일(월) 전학년 *진로체험 9월중 2,5,6학년 *학생도박예방교육주간 13일(화) 전학년 *진로체험 16일(금) 5,6학년 *학부모상담주간 19일(월)							*교육활동발표회 7일(금) 전학년 *가을현장체험학습 12일(수) 1,3학년 *가을현장체험학습 13일(목) 4,5학년 *정보통신윤리교육 2 18일(화) 전학년 *가을현장체험학습 19일(수) 2학년 *소방훈련 26일(수) 전학년 *개천절 3일(월) *개교기념일 4일(화) *대체공휴일 10일(월)							
11							12							2023. 1							2023.2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1	2	3	1	2	3	4	5	6	7				1	2	3	4	
6	7	8	9	10	11	12	4	5	6	7	8	9	10	8	9	10	11	12	13	14	5	6	7	8	9	10	11	
13	14	15	16	17	18	19	11	12	13	14	15	16	17	15	16	17	18	19	20	21	12	13	14	15	16	17	18	
20	21	22	23	24	25	26	18	19	20	21	22	23	24	22	23	24	25	26	27	28	19	20	21	22	23	24	25	
27	28	29	30				25	26	27	28	29	30	31	29	30	31					26	27	28					
*장애인식개선교육 2 2일(수) 전학년 *인권교육 2 7일(월) 1~5학년 *테마식현장체험 7일(월)~8일(화) 6학년 *인권교육 2 9일(수) 6학년 *진로체험 18일(금) 1,3,4학년 *2학기 독서행사 25일(금) 전학년 *생명존중교육주간 28일(월) 전학년							*전교어린이회선거 9일(금)							*종업식 6일(금) 1~5학년 *졸업식 6일(금) 6학년														
														*설연휴 21일(토)~24일(화) *하늬미만(화) 23.1.7.(토)~2.28.(화)							*학년말방학 23.1.7.(토)~2.28.(화)							

◆ 학교 행사는 코로나-19 상황 및 학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청탁금지법 이해

▣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를 금지함으로써 누구에게나 깨끗하고 공평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정하였습니다.

▣ 학부모님과 관련된 적용대상은 공직자 등(유·초·중·고등학교 교직원, 사립학교 교직원 및 학교법인 임직원), 공직자 등의 배우자,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는 민간위원(학교운영위원회 위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 등), **부정청탁 및 금품을 제공한 일반국민**입니다.

▣ 부정청탁의 금지

▶ '입학, 성적, 수행평가 등 학교업무의 처리·조작'은 부정청탁 금지 행위 14가지 중 한 가지입니다.

▶ 위반 시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제3자를 통해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을 한 이해당사자
⇒ 1천만원 이하

제3자를 위하여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을 한 자(민간인)
⇒ 2천만원 이하

제3자를 통해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을 한 공직자등
⇒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등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형사처벌

▣ 금품등의 수수 금지

▶ 누구든지 공직자등 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안됩니다.

▶ 위반 시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1백만원 이하의 금품 등을 수수한 공직자등

*배우자가 수수한 금품 등을 신고하지 않은 공직자등

*금품 등을 공직자 또는 공직자의 배우자에게 제공한 자
⇒ 수수금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

과태료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백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백만원 초과 금품등을 수수한 공직자등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형사처벌

※ 그 외 자세한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부패방지/부패방지자료/청탁금지법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질문으로 알아보는 청탁금지법

1 방과후교사는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A 방과후교사는 교원이 아니므로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2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인 학부모는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다?

A 초·중등교육법령에 따라 설치된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위원은 공무수행사인으로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입니다.

※ 공무수행사인은 '공무수행에 관하여'만 청탁금지법(부정청탁, 금품등 수수 금지)이 적용됩니다.

3 학교에서 채용한 운동부 코치·감독에게 지도학생(학부모)이 선물을 드려서는 안된다?

A 지도학생(학부모)이 드리는 선물은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을 벗어나므로 안됩니다.

4 대학교 입시설명회에 참석한 고등학생과 학부모는 대학교에서 제공하는 다과와 홍보물을 받아도 된다?

A 학생과 학부모는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다과와 홍보물을 받아도 됩니다.

5 학부모는 담임교사에게 케익, 기프트콘 등의 선물을 드려서는 안된다?

A 담임교사와 학부모 사이의 선물은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을 벗어나므로 안됩니다.

6 담임교사가 결혼할 때 학생들(학부모)이 축의금을 제공해도 된다?

A 학생들(학부모)이 담임교사에게 제공하는 축의금은 부조의 목적을 벗어나므로 안됩니다.

※ 학생들이 불러주는 축가는 사회상규상 가능합니다.

7 학생(학부모)이 작년 담임교사에게 감사의 선물을 드릴 수 없다?

A 현재 담임교사, 교과목 담당교사 등이 아닌 경우에는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5만원(농수산물·농수산물가공품은 10만원) 이하의 선물은 가능합니다.

8 교과목 담당교사인 기간제교사의 생일에 5만원 짜리 상품권 선물은 드려도 된다?

A 기간제교사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고, 학생의 성적 평가 등을 하는 교과목 담당교사와 학생 사이의 선물은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을 벗어나므로 드려서는 안됩니다.

9 학부모 단체가 고3 학생들의 수능시험을 격려하기 위해 플래카드를 부착해서는 안된다?

A 학생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학생들의 수능시험 격려를 위해 플래카드를 부착해도 됩니다.

10 졸업식날 학생들(학부모)이 담임교사에게 꽃다발을 드려서는 안된다?

A 졸업식날 담임교사에게 꽃다발을 드리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성적 평가 등이 종료되어 직무관련성이 없으므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불법찬조금 예방 및 학교운동부 청렴도 제고

1 불법찬조금이란

학부모 단체(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운동부 학부모, 방과후교육활동·청소년단체 등 교육활동 후원단체)등이 학교발전기금(또는 학교회계)에 기탁·편입하지 않고, 교육활동 지원 목적으로 할당·모금을 통해 학부모 단체에서 직접 사용하는 일체의 금품.

- ⇒ 학교발전기금(또는 학교회계)으로의 기탁에 의한 학교측에서의 집행이 아닌, **학부모 개인(또는 단체)이 현금 또는 카드결제를 통해 직접 집행하는 경우**
- ⇒ 불법찬조금이 금품, 향응 수수와 같은 공무원 비리와의 연결되는 사례가 빈번하며, 이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교육활동 지원경비에 있어 학부모의 직접 집행이 아닌 발전기금(학교회계) 기탁을 통한 정상적인 절차를 준수함으로써 투명성을 확보해야함(**불법찬조금에 의한 금품 수수는 개별 촌지보다 더욱 질이 나쁜 구조적 집단 촌지임**)

※ 학교발전기금 조성 가능 분야 및 절차 (시행령 64조 2항)

- (분야) ① 학교교육시설의 보수 및 확충 ② 교육용 기자재 및 도서의 구입 ③ 학교체육 활동 기타 학예활동의 지원 ④ 학생복지 및 학생자치활동의 지원
- (절차) 사전에 사용목적, 조성방법, 수입·지출계획 등이 포함된 학교발전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고,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학교운영위원장 명의로 조성·운영

2 불법찬조금 유형

- 학부모회 및 학급임원회 등 자생단체에서 가정통신문, 전화, 문자 등을 통해 학부모에게 일정액을 할당하거나 회비 납부를 강요하여 모금
 - 집행 용도
 - 학생간식비, 학교행사 지원, 심화학습반 운영비, 교직원 회식비 등 용도
 - 학교운동부 학부모회에서 인건비 보조, 대회 출전 또는 훈련 수고비 명목으로 정당한 회계절차 없이 모금·집행
- ※ 단, 당초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발전기금(또는 학교회계)에 편입 사용하기로 결정한 금품을 학부모측에서 결정에 따르지 않고 임의로 모금, 사용하는 경우에는 불법 찬조금 관련 처분 기준이 아닌 회계처리 부적정을 적용함.

3 학교 발전기금과 불법 찬조금의 비교

학교발전기금	구분	불법찬조금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구성명의	학교운영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조성되는 행위
-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기부 . 조성 ※ 홍보시 “자발적 참여로 조성하며, 자발적 이 아니면 절대로 조성하면 안된다”는 사항을 반드시 명시	구성방법	- 자발적인 의사에 반한 모금 조성행위 ※ 일정액 할당, 납부서 일괄배부, 개별 면담 또는 전화를 통한 강요 등 - 학교발전기금회계에 편입하지 않는 행위
- 학교발전기금회계로 편입 - 학교교육시설의 보수 및 확충 - 교육용 기자재 및 도서의 구입 - 학교체육활동 기타 학예활동의 지원 - 학생복지 및 학생자치활동의 지원	사용목적	- 법령에 의하지 않은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행위 ※ 교직원의 각종수당(인건비), 여비, 연수비, 회식비, 체육복구입비 등 ※ 각종협의회비, 간담회비, 선물비, 회환 등

4 불법찬조금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

- 학교 운동부의 경우 수의자부담경비 수납 및 집행의 절차상 번거로움과 본인의 자녀에게 사용되는 직접 경비라는 이유로 학부모들간 모금행위가 위법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음
 - 자생단체에서 집단적으로 모금·사용하는 것은 부패행위가 아닌 것으로 인식
- 일부 학부모 임원들의 선동에 의해 간식비, 각종행사 지원비, 선물비 등의 명목으로 일정액을 할당해 모금할 경우, 대다수 학부모가 비협조 시 자녀의 불이익을 우려하여 동조하는 등 잘못된 인식 상존

5 불법 찬조금 신고 안내

[불법찬조금 신고처]

- 교육청 홈페이지, 서류, 구술, 우편 등에 의하여 도교육청과 관할 교육지원청에 신고·접수
- 전라북도교육청 홈페이지(<https://www.jbe.go.kr>)-전자공개/민원-민원신고센터-춘지수수,불법찬조금 신고-클릭
- 지방교육재정알리미(eduinfo.go.kr)를 통해 17개 시도 교육청 신고센터 연결
- 국민신문고: www.epeople.or.kr → 민원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금지 안내

1 선행학습의 문제점

※ 통상적 예습의 범위를 넘어선 과도한 선행학습에 대한 사회적, 교육적 문제점들은 다음과 같음.

가. 다른 학습자의 학습권과 교사의 수업권 침해

학생이 수업 내용을 미리 알고 있을 경우 학생 자신은 학교 수업의 적극성이 결여되고 교사는 학생들이 이미 알 있다고 판단하여 기본개념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넘어가는 악순환으로 인한 다른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수업권이 침해를 받게 됨.

나. 사고력과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의 저하

학교교육과정은 학생의 인지, 정서 및 사회발달 단계와 사고의 수준을 고려하여 구성되어 있으나 발달 단계와 사고의 수준을 넘어서는 내용의 학습으로 충분히 사고하고 이해하려는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이 떨어져 피상적이고 기계적인 문제 풀이 학습에 치우치게 되어 사고력, 흥미도 및 집중력 저하 등 다양한 문제를 파생시키게 됨.

다. 남보다 앞서 나가기 위한 지나친 속도 경쟁

선행학습을 하는 내용이 곧 그 학생의 실력이라는 잘못된 편견(예: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중학교 1학년 수학을 하고 있으면 중학교 2학년 수학을 공부하는 학생이 더 잘한다는 의식)으로 인하여 선행학습은 무한 속도 경쟁에 내몰리고 있는 실정이나 사고력 저하로 대학입시에서는 좋은 성적을 내지 못하고 있음.

2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 행위 금지

가. 선행교육

○ 교육관련기관에서 국가교육과정, 시도교육과정, 학교교육과정에 **앞서서 편성하거나 제공하는 교육** ('앞서서' 교육과정이란, 해당 학기, 학년, 또는 학년군에서 학습하도록 계획된 내용에서 벗어난 내용을 말함)

나. 선행학습

○ 선행학습이란 학습자가 학교교육과정에 앞서는 범위와 수준의 내용을 학습하는 것을 말한다.

<선행교육과 선행학습 비교>

구분	선행교육	선행학습
주체	교육관련기관	학습자
정의	학교교육과정에 앞서서 편성 또는 제공하는 교육 일반	학교교육과정에 앞서서 하는 학습

다. '공교육정상화법' 적용 배제 교과

- 체육, 예술 교과(군), 기술가정교과(군), 실과, 제2외국어, 한문, 교양 교과(군), 전문 교과는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 초등학교 1학년과 2학년의 영어 방과후학교 과정 (초등학교 1-2학년에서 놀이, 활동, 음성언어 중심의 영어 방과후학교 운영 가능)
- '초·중등교육법' 제27조 제1항에 따른 조기 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
- 「영재교육 진흥법」에 따른 영재교육기관의 영재교육은 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라. 학부모의 책무

- 공교육정상화법 제6조(학부모의 책무) 학부모는 자녀가 학교의 교육과정에 따른 학교 수업 및 각종 활동에 성실히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학교의 정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3 공교육정상화에 대한 주요 Q&A 내용

Q1. 선행교육 또는 선행학습에서 선행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 선행교육 또는 선행학습은 학교교육과정에 앞서서 이루어지는 교육 또는 학습을 의미합니다. 통상적으로 교수·학습 및 평가는 학기 단위로 이루어지므로 학기를 기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단, 학기를 넘어서는 교육과정 재구성의 경우에는 반드시 진도계획표를 수정하고 정보공시를 해야 합니다.

Q2. 학생이 스스로 공부하는 선행학습도 이 법에 따라 금지되나요?

- 그렇지 않습니다. 이 법은 학습자가 자발성을 가지고 개별적으로 공부하는 선행학습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교육과정을 앞서서 지도하는 선행교육, 그리고 학교 시험이나 상급학교 입학전형 등에서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입니다.

Q3. 선행교육의 정의에서 '학교교육과정에 앞서서 편성 또는 제공하는 교육 일반'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 학교는 시·도 교육청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에 의해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해야 합니다. 현행 교육과정에서는 초등학교는 1~2학년군, 3~4학년군, 5~6학년군 등 모두 3개의 학년군으로 이루어지며, 중·고등학교는 1~3학년 전체가 하나의 학년군입니다. 따라서 앞서서 편성하는 경우란 초등학교의 경우 학년군을 앞서서, 중·고등학교의 경우 학교급을 앞서서 교육과정을 편성하는 경우입니다.
- A. 앞서서 제공하는 경우는 계획된(편성된) 학교 교육과정에서 학기, 학년(군) 또는 학교급을 앞서서 운영하는 경우입니다.
- 예를 들어 2학기에 편성된 교수학습 내용을 1학기에 가르치거나, 다음 학년에 편성된 교과 내용을 이번 학년에서 가르치거나, 상급 학교의 교과목 내용을 가르치는 것은 선행교육에 해당됩니다.

가정에서의 인권교육과 학생 인권 보호

1. 인권이란?

인권은 말 그대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 권리를 말합니다. 사람이 단순히 사람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누리는 권리가 바로 인권이며 자신의 성격과 지능, 재능, 양심 등을 발전시키는 것 모두가 인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권은 인간이 사회생활을 영위해 가면서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도 함께 의미합니다.

2. 가정에서의 인권교육

가정에서의 인권교육은 기본적으로 **가족 간의 사랑**에서 출발합니다. 그러므로 행복한 가정생활 속에서의 형제애, 가족 간의 예절, 나아가 이웃 간의 예절 등이 가정에서의 인권교육의 본질적인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정에서의 인권존중 교육이 중요합니다.

우리 어린이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친인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학교, 가정, 지역사회의 상호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친인권적 분위기에서 우리 어린이들이 더욱 밝고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으므로 학교에서도 학생 인권교육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항상 자녀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올바른 인권지킴이가 되기 위해 학부모님께서도 많은 관심과 실천을 부탁드립니다.

3. 우리 가족의 인권 지수는?

☞ 어린이가 체크(✓) 해 봅시다.	체 크		비 고
	○	×	
1. 화가 나면 말보다는 행동으로 감정 표현을 한다.			※ ○가 몇 개나 되나요? ▶ 3개 이하 인권 지킴이 ▶ 4개-7개 인권 노력이 ▶ 8개 이상 서로 존중하며 더욱 노력해요
2. 하고 싶지 않아도 해야 할 때가 더 많다.			
3. 가족들 사이에도 비밀은 지켜지지 않는다.			
4. 부모님은 나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시지 않는다.			
5. 형제들과 함께 놀아주는 것이 귀찮다.			
6. 잘못을 했을 때는 자주 매를 맞는다.			
7. 부모님은 나를 자랑스러워 하신다.			
8. 형제들과 비교를 당하거나 차별을 받는다.			
9. 사람들 앞에서 창피를 당하기도 한다.			
10. 우리는 한 가족이라는 생각이 든다.			

☞ 부모님께서 체크(✓) 해 봅시다.	체 크		비 고
	○	×	
1. 가족과 함께 하는 일들이 많다.			※ ○가 몇 개나 되나요? ▶ 3개 이하 인권 오염이 ▶ 4개-7개 인권 노력이 ▶ 8개 이상 서로 존중하며 더욱 노력해요
2. 아무리 바쁘더라도 아이들을 방치하지 않는다.			
3. 아이들의 비밀은 언제나 지킨다.			
4. 부모의 감정 상태에 따라 아이들을 훈육하지 않는다.			
5. 내 아이가 다른 친구들과 어울려서 놀 수 있도록 한다.			
6. 아이들의 의사표현에 귀를 기울인다.			
7. 아이들이 문화적인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			
8. 아이들 앞에서는 부모간에 정중한 언어사용을 한다.			
9. 공부를 잘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10. 애들이 뭘 알겠어? 라는 생각을 자주 한다.			

4. 학생 인권 보호를 위한 학부모의 책무성 강화

아동의 학습권 보장(헌법 및 교육기본법)	
[헌법 제 32조]	②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교육기본법 제13조]	① 부모 등 보호자는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바른 인성을 가지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교육할 권리와 책임을 가진다. ② 부모 등 보호자는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의 교육에 관하여 학교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학교는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5. 학생 인권 보장 지침

- ① 모든 학생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 ② 모든 학생의 학습권은 차별받지 않고 보장되어야 한다.
- ③ 모든 학생은 정규교과 이외 교육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 ④ 모든 학생은 인권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
- ⑤ 모든 학생은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6. 자녀 존중 십계명

- ① 자녀도 독립된 인격체라는 인식을 부모가 먼저 가져야 한다.
- ② 가정 안에서의 의사 결정에서 자녀의 의견도 존중되어야 하고, 가족회의 등을 통해 민주적이고도 합리적으로 의사 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 ③ 자녀의 진로에 대해 부모는 단지 조언의 역할에 만족해야 한다.
- ④ 형제·자매간에 성별, 나이, 학업 성적 등의 이유로 차별대우가 있어서는 안 된다.
- ⑤ 자녀를 이웃의 자녀들과 비교해서는 안 된다.
- ⑥ 자녀가 잘못을 했을 때는 일방적인 체벌보다는 왜 잘못인지를 깨닫게 하고, 스스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 ⑦ 교육적 체벌도 가급적 삼가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정이 섞여 있지 않은지 부모 자신이 먼저 성찰해야 한다. 자녀를 때리지 않고도 기를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한다. 어떤 경우에도 욕설을 해서는 안 된다.
- ⑧ 자녀를 흥분한 상태에서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
- ⑨ 자녀들이 다른 사람의 권리도 존중할 줄 아는 생각과 생활 태도를 지니도록 늘 가르쳐야 한다.
- ⑩ 자녀의 일상생활에 대해 깊은 관심을 지니되, 자녀의 사생활도 보호해주어야 한다.

학부모 정보통신윤리교육

가. 인터넷중독

■ 인터넷중독이란?

인터넷을 과다 사용하여 인터넷 사용에 대한 금단과 내성을 지니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이용자의 일상생활 장애가 유발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한국정보문화진흥원, 2002)

〈 인터넷 중독 예방지침 〉

- 특별한 목적 없이 컴퓨터를 켜지 않기
- 컴퓨터 사용시간 가족들과 협의결정
- 컴퓨터 사용시간과 내용을 사용일지에 기록
- 알람시계로 사용시간 수시확인
- 인터넷으로 식사나 취침시간을 어기지 않기
- 운동이나 취미활동시간을 늘리기

나. 스마트폰 중독

■ 스마트폰 중독이란?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으면 우울하거나, 초조함, 답답함을 느끼며 습관적으로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심각할 정도로 집착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 올바른 스마트폰 사용방법 〉

- 재미도 있고 도움도 되는 유용한 앱 활용
- 스마트폰 필요할 때에만 사용
- 친구들과 눈으로 대화
- 때와 장소에 따라 적절히 사용
- 시간제한 앱 깔고 푸시(알림) 기능 끄기
- 온라인에 글을 남길 때에는 신중하게 작성

다. 사이버 언어폭력

■ 사이버 (언어)폭력의 최근 형태

최신 유형	설명
카카오톡 왕따	오프라인에서 벌어지는 왕따 행위를 모바일 공간으로 옮겨와서 자행하는 것
와이파이 셔틀	스마트폰의 테더링 기능을 이용해서 피해학생의 스마트폰을 와이파이 공유기처럼 사용하는 것으로, 무선데이터 갈취를 통해 금전적 피해를 주는 것
게임 아이템 셔틀	게임을 하기 위해 필요한 아이템을 피해 학생에게 상납받는 행위

〈 사이버 언어폭력 대처방안 〉

1. 사이버 폭력에 대해 규칙적으로 대화를 나눈다.
2. 바른 언어습관의 사용에 대해 지도하고 모범을 보인다.
3. 사이버 폭력 피해 시 학부모님들의 직접 해결보다는 학교에 도움을 요청한다.
4. 자녀들의 온라인 활동 (카카오톡, 카카오톡스토리 등)에 관심을 가진다.
5. 컴퓨터 및 스마트폰에 음란물과 폭력물을 필터링하는 프로그램 혹은 앱을 설치한다.
6. 자녀들이 문제가 생길 경우 직접 해결하지 말고 어른과 상의할 것을 강조한다.
7. 스마트폰 및 인터넷 사용시간을 정하고 관리를 한다.
8. 사건 발생 전의 사이버 언어폭력 예방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스마트 기기 (자녀 및 부모 스마트폰) 유해정보 차단

☞ 구글 패밀리 링크 앱:

- 자녀의 위치 확인 / 앱 사용 기록 / 앱 설치 제한 / 일별 이용 가능시간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 스마트보안관 , 아이스마트키퍼 앱

- 청소년이 스마트폰에서 불법 유해정보(앱, 인터넷사이트)를 이용할 수 없도록 차단하고, 부모가 자녀의 스마트폰 이용정보 및 시간을 관리할 수 있는 모바일용 SW입니다.

부모 스마트폰에 설치한 경우 자녀의 스마트폰 이용시간 · 앱 · 웹사이트 관리, 자녀 스마트폰 이용 통계 확인이 가능합니다.



미래창조과학부(한국정보화진흥원) 과의존 예방프로그램

① 스마트쉽센터(<http://www.iapc.or.kr>)

- ‘스마트폰 과의존 유아동척도(관찰자용/성인용)’ 활용



② 센터 및 학생, 학부모 대상 운영 프로그램 안내

<p>전국 18개 스마트쉽센터 공통 (053-230-2015)</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생대상) - 가정 및 학교방문을 통한 찾아가는 상담서비스 제공 ·(학부모대상) - 가정 및 학교방문을 통한 인터넷 스마트폰 과의존 - 청소년 부모 대상 찾아가는 상담서비스 제공 가능
--	--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 예방교육

1 아동학대의 개념

아동학대란? (아동복지법 제32제7항)

·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 아동이란? 만18세 미만(즉, 고등학생도 포함)

2 아동학대 신고

언제?



- 아동의 울음소리, 비명, 신음소리가 계속되는 경우
- 아동의 상처에 대한 보호자의 설명이 모순되는 경우
- 계절에 맞지 않거나 깨끗하지 않은 옷을 계속 입고 다니는 경우
- 뚜렷한 이유 없이 지각이나 결석이 잦은 경우
- 나이에 맞지 않는 성적 행동을 보이는 경우

무엇을?



- 신고자의 이름, 연락처
 - 아동의 이름, 성별, 나이, 주소
 - 학대 행위자로 의심되는 사람의 이름, 성별, 나이, 주소
 - 아동이 위험에 처해있거나 학대를 받고 있다고 믿는 이유
- ※ 아동이나 학대 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합니다. 또한, 보호자에게 신고 내용을 알려 아동학대 증거가 은폐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어떻게?



- 전화 : 국번 없이 112
- 방문 :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 신고자의 신분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 62조에 의해 보장됩니다.

3

가정폭력의 정의

- ▶ 가정 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 ▶ 가정 구성원의 범위 : 배우자, 전 배우자,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와 기타 동거하는 친족 관계에 있는 자를 모두 포함
※ 동거하지 않는 형제자매는 해당 없음

4

가정폭력 신고 및 도움요청

여성 긴급 전화 (1366)	가정폭력 상담소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65일 24시간 개입 상담 · 긴급 피난처 운영: 7일 이내 긴급 보호 · 지역 관련 기관 연계 (쉼터, 법률, 의료 등) · 13개국 이주여성 자국어 상담, 통역 서비스 지원 · 이주여성 쉼터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일: 9:00 ~ 18:00 정기적인 상담 · 가해자 교정 및 치료 프로그램 운영 · 피해자 치료 및 회복 프로그램 운영 · 부부 및 집단 상담 · 지역 관련 기관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속적인 상담 법률, 의료지원 서비스 · 자녀와 함께 생활 (의,식,주 무료 제공) · 학습 지원(비밀 전학 등) · 자립 지원 (취업 연계, 직업훈련 등)

생명존중(자살 예방) 교육

1. 성인 자살과의 차이점



2. 자살 시도를 예측할 수 있는 신호들

행동신호들

- 줄, 칼 등을 준비하고 감춤
- 수면, 진통제, 감기약 등을 모아서 감춰둠
-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친구나 선생님을 찾아감
- 일기장, 낙서, 블로그, SNS 등으로 자살, 죽음에 대해 표현
- 자신의 물건을 정리하거나 의미 있는 소장품을 남에게 주거나 버림

언어신호들

- 나 정말 죽고 싶어
- 내가 죽어버리면 좋을텐데...
- 나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
- 사라져 줄게
- 멀리 떠나고 싶다
- 깨어나지 말았으면...
- 날아가버리고 싶다
- 내가 죽어도 아무도 슬퍼하지 않겠지?

기타신호들

- 갑작스러운 행동변화
- 흥미와 에너지의 저하
- 사람들과 만남을 끊고 혼자 지내려 함
- 감정기복이 심해짐
- 식욕과 수면습관의 변화
- 외모와 위생 상태에 대한 관심의 결여
- 성적이 떨어지거나 조퇴, 무단결석이 많아짐
- 위험한 행동이 증가함

3. 자살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요인 및 감소시키는 요인

자살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요인		자살의 위험을 감소시키는 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울 증상 및 과거 자살 경험 시도 · 술, 담배 경험 · 자신에 대한 비난 및 낮은 자존감 	개 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기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 · 원만한 대인관계 · 어려운 상황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자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 관계에 대한 불만족, 가정폭력 · 의사소통이 적은 가족 구조 · 이혼 혹은 가족구성원의 죽음 		가 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 간의 지지적이고 친밀한 관계 · 높은 가족 응집력 · 가족 간 원만한 의사소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폭력 및 집단 따돌림 · 또래 관계 갈등(동성, 이성) · 성적에 대한 부담감, 학업 스트레스 			학 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종 매스컴의 자살 보도 · 정신건강치료에 대한 편견 · 자살 수단에 대한 접근 용이성 (고층아파트 등) 		사 회	

4. 부모가 하지 말아야 할 행동

자살 위험의 아이를 발견하였을 때 부모들이 흔히 취하는 잘못된 태도	
자책하기	우리 아이가 이러는 것은 다 나 때문이야.
분노하기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지 네가 이럴 수 있어?, 그럴거면 차라리 죽어.
지키기 어려운 약속하기	네가 원하는 것은 뭐든지 다 사줄게, 유학 보내줄게.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하기	네 나이 때에는 다 그럴 수 있어, 별거 아니야.
비아냥거리기	쓸데없는 생각 말고 네 할 일이나 잘해.

5. 자살하려는 사람을 돕는 방법

- ① 주의 깊게 자살의 징후를 살핍니다.
- ② 관심을 보이며, 도움이 되도록 합니다.
- ③ 억지로 무언가를 하도록 다그치지 않습니다.
- ④ 자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질문합니다
- ⑤ 감정을 표현하게 하고 그 감정을 수용합니다.
- ⑥ 결정적인 묘수를 제공하려고 조언하지 않습니다.
- ⑦ 질문은 직접적인 형태로, 자살에 대해 자유스럽고 공개적으로 묻습니다.
- ⑧ “왜”냐고 묻지 않도록 합니다. 이런 질문은 심리상태를 방어적으로 만듭니다.
- ⑨ 비밀 보장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가족이나 도와줄 사람을 찾아 알려야 합니다.
- ⑩ 대안이 가능할 것이란 희망을 주도록 합니다. 단, 그럴듯한 확신을 주지 않아야 합니다.
- ⑪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합니다. 자살 도구를 치우고 정신과 의사나 자살 예방 전문기관에 도움을 청합니다.
- ⑫ 그들의 감정을 동정하지 말고, 공감하도록 합니다. 충격 받은 듯이 행동하지 않습니다. 이런 태도는 거리감을 만듭니다.
- ⑬ 자살이 옳은지, 나쁜지 또는 심리상태가 올바른지, 잘못되었는지 논쟁하지 않도록 합니다. 인생의 가치 또는 도덕관으로 설득하지 말아야 합니다.

6. 자살 예방 대처 방법 (가정)

- ① 자녀에게 충분한 정서적 지원을 합니다.
- ② 부모의 모범적인 생활을 통한 모델링을 제시합니다.
- ③ 자녀와 대화시간을 확보하고, 친밀한 관계를 형성합니다.
- ④ 자녀의 행동 변화를 유심히 살펴봅니다. (수면, 표정, 식습관 등)
- ⑤ 적절한 위기의식이 필요합니다. (전문기관과 연계 상담)

코로나 우울 대처하기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유행이 일어난 지도 벌써 1년이 넘었습니다. 이제 백신이 개발, 보급되기 시작하여 조금씩 희망이 보이는 단계이긴 하지만, 지금 우리 삶의 모습들은 예전과는 정말 많은 측면이 달라져 있습니다. 내 주변에서 감염이 일어나지는 않을까 늘 걱정하며, 매일 답답한 마스크를 하고 있어야 하고, 보고 싶은 친척, 친구조차도 마음 놓고 만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오래도록 지속되면서 아이들뿐만 아니라 부모님 또한 지치고 쉽게 우울한 마음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 코로나 시대의 변화된 우리 삶의 모습

혜승이네 집은 맞벌이 가정입니다. 코로나19 유행이 심해져서 전국적으로 거리두기가 확대 실시되었습니다. 그래서 혜승이와 두 살 터울 동생 헤민이가 다니는 학교도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아침을 준비하면서 아이들 점심거리도 미리 챙겨놔야 하기에, 혜승이 엄마 마음은 무척이나 바쁩니다. 아이들끼리 식사를 잘 챙겨 먹는지도 걱정되지만, 온라인 수업을 제 시간에 집중하여 듣는지, 공부 진도를 스스로 챙겨하는지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종일 집에 있다보니 게임이나 핸드폰에 마음이 가 있을텐데 싶지만, 잔소리 말고는 딱히 뽀족한 방법이 없습니다.

혜승이 엄마가 출근길에 가까스로 출발하는 버스에 탔는데, 사람이 꽉 차서 발 디딜 틈조차 없습니다. 마스크는 하고 있지만 사람이 가득한 버스 안에서 왠지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어제도 익산시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많이 발생했다는 뉴스가 들리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혜승이 아빠는 몇 년 전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식당을 개업하였는데, 손님이 확 줄어 걱정이 많습니다. 아르바이트 없이 혼자서 일하는 시간을 늘리고, 배달 서비스도 해보고 있지만, 과연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지 막막합니다. 문 닫는 주변 상가들이 나날이 늘어가는 것을 보면서, 혜승이 아빠의 걱정 어린 한숨도 깊어만 갑니다.

1 코로나 우울이란 무엇일까요?

- ◎ '코로나 바이러스 19 감염증' 유행으로 인하여 생긴 삶의 모습 변화와, 우울한 기분을 합친 말입니다.
- ◎ 코로나 19 감염에 대한 두려움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 경제적, 심리적 측면의 다양한 변화들로 인하여 우울감, 불안감, 피로감, 분노 등 다양한 증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2 코로나 우울은 어떻게 발생하게 되는 걸까요?

- ◎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두려움은 아이와 어른을 가리지 않고 나타납니다.
- ◎ 코로나19 관련 부정적인 뉴스에 반복하여 노출되지만, 당장 뚜렷한 해결책이 없기 때문에 흔히 무력감을 느끼게 됩니다.
- ◎ 이전에 학교나 학원, 시설 등에서 맡아주던 교육과 돌봄의 역할이 상당 부분 부모님의 역할로 넘어오면서, 신경 써야 할 일들이 늘어나고 시간적인 여유가 줄어듭니다.
- ◎ 외출, 외식, 여행, 운동, 관람, 만남, 취미활동 등 기분 전환 활동이 줄어듭니다.
- ◎ 가계 수입 감소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이 동반되는 경우, 부모님의 스트레스는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3 내가 코로나 우울일까요?

 아래와 같은 상황을 반복적으로 경험한다면 코로나 우울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 예전보다 걱정이 많아지고, 사소한 일에도 쉽게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 기분이 가라앉거나, 매사가 귀찮거나, 무기력한 느낌이 자주 듭니다.
- 작은 일에도 짜증이나 화가 나고, 다툼이 생깁니다.
- 자주 두통, 소화불량, 어지러움, 근육통 등 다양한 신체증상을 경험합니다.
- 일상적인 일 (수면, 식사, 간단한 업무 등)을 해 나가는데도 어려움을 느낍니다.



아래 간단한 우울증 선별 평가 도구 (PHQ-9) 를 사용해서 나의 마음 상태를 체크해 보고, 필요하다면 적절한 도움을 요청하세요.

우울증 건강설문-9 (PHQ-9)

지난 2주간, 얼마나 자주 다음과 같은 문제들로 곤란을 겪으셨습니까?

지난 2주 동안에 아래와 같은 생각을 한 날을 헤아려서 해당하는 답변에 ○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 항	없음	2~6일	7~12일	거의 매일
1	기분이 가라앉거나, 우울하거나, 희망이 없다고 느꼈다.	0	1	2	3
2	평소 하던 일에 대한 흥미가 없어지거나 즐거움을 느끼지 못했다.	0	1	2	3
3	잠들기가 어렵거나 자주 깬다. /혹은 너무 많이 잤다.	0	1	2	3
4	평소보다 식욕이 줄었다. /혹은 평소보다 많이 먹었다.	0	1	2	3
5	다른 사람들이 눈치 챌 정도로 평소보다 말과 행동이 느려졌다. /혹은 너무 안절부절 못해서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었다.	0	1	2	3
6	피곤하고 기운이 없었다.	0	1	2	3
7	내가 잘못 했거나, 실패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혹은 자신과 가족을 실망시켰다고 생각했다.	0	1	2	3
8	신문을 읽거나 TV를 보는 것과 같은 일상적인 일에도 집중 할 수가 없었다.	0	1	2	3
9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낫겠다고 생각했다/ 혹은 자해할 생각을 했다.	0	1	2	3
각 칸별로 점수를 더해주세요.					
총 점					



PHQ-9 결과 해석

점수	분류	설명 예시
0-4	우울 아님	유의한 수준의 우울감이 시사되지 않습니다.
5-9	가벼운 우울	다소 경미한 수준의 우울감이 있으나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는 아닙니다. 다만, 이러한 기분상태가 지속될 경우 개인의 신체적, 심리적 대처자원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 가까운 지역센터나 전문기관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10-19	중간정도의 우울	중간정도 수준의 우울감이 시사됩니다. 이러한 수준의 우울감은 흔히 신체적, 심리적 대처자원을 저하시키며 개인의 일상생활을 어렵게 만들기도 합니다. 가까운 지역센터나 전문기관을 방문하여 보다 상세한 평가와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20-27	심한 우울	심한 수준의 우울감이 시사됩니다. 전문기관의 치료적 개입과 평가가 요구됩니다.

4 코로나 우울,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코로나 우울로부터 마음 건강을 지키기 위한 방법으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①. 코로나로 인해 변화된 일상을 받아들이세요.

- ▶ 코로나가 장기화된 상황에서 불안, 우울, 피로감을 느끼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과정입니다. 가족 내에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대화 속에서 자신의 감정을 자연스럽게 표현하고, 때로 맞장구 쳐 주고, 서로의 표현을 격려하는 것은 도움이 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새로운 변화를 받아들이고 건전하게 해소할 방법을 고민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SNS만 붙들고 있어 걱정했는데, 친구들과 만나지 못해 사이가 멀어질까 봐 걱정이 되었구나. 충분히 그럴 수 있겠어."

"그래, 요새 아침마다 바쁘고 챙길 일도 많지? 아이들이 따라주지 않을 때 화가 나는 것이 당연할 수 있겠다."

②. 지나친 걱정은 No, 방역지침을 잘 알고 실천하면 됩니다.

- ▶ 너무 많은 정보나 불확실한 정보는 불안과 스트레스를 크게 할 수 있습니다. 방역수칙에 관심을 기울이고,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③. 규칙적인 생활을 하세요.

▶ 수면시간, 출, 퇴근 시간, 식사 시간 등을 정하고 이를 지키려 노력하면 가족 간의 신뢰가 커지고, 자기효능감과 조절감을 느끼게 합니다. 불확실한 외부 상황에서도 예측 가능한 스케줄을 만들어 가족들이 공유하는 일은 안정감을 높여줍니다. 부모님부터 먼저 모범을 보이면 아이들도 따르기 쉽습니다.

④. 집안일을 아이들과 나누어 하고, 마음이 즐거워지는 활동이나 여가시간을 가져보세요.

▶ 아이들과 집안일을 함께 나누어 하고, 진심 어린 칭찬과 고마움을 표현하세요. 아이들의 성취감과 책임감이 늘어납니다. 아이들과 함께하는 보드게임, 집안 꾸미기, 간단한 동영상 제작 등의 활동은 모두를 즐겁게 합니다. 개인적인 취미나 짧은 여가시간을 가지는 것도 일상의 스트레스에서 벗어나도록 합니다.

⑤. 스트레칭, 걷기, 운동 등 신체활동을 규칙적으로 하세요.

▶ 적당한 신체활동은 마음의 건강을 유지하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외부에서 신체활동을 해볼 수 있습니다. 홈트레이닝과 같이 가벼운 실내 신체활동도 도움이 됩니다. 신체활동이 필수적인 성장기 아이들과 함께 실천할 방법들도 고민하세요.

⑥. 가족, 친구 등 주변사람들과 소통을 이어가세요.

▶ 먼 거리에 계신 부모님이나 친척, 혹은 친구와 영상통화, 전화, 메일, 편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소통을 지속합니다. 서로에게 간단한 응원의 글귀나 새해 인사를 나눔으로써, 연결되어 있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고민과 고통을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때로 마음이 편안해 지기도 합니다.

⑦. 힘들면 도움을 요청하세요.

▶ 누구나 힘들 수 있습니다. 자신과 주변 사람들의 몸과 마음의 건강을 잘 살피고, 필요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 심리상담 핫라인 : ☎1577-0199 ▶ 앱 마음프로그램, 마성의 토닥토닥

▶ 카카오톡 채널 : 국가트라우마센터 ▶ 가까운 정신건강복지센터, 심리상담센터 등 방문

5 코로나19 유행은 언젠가 끝나게 될 것입니다.

아직은 코로나19라는 길고도 힘겨운 터널 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09년 신종 인플루엔자, 2015년 메르스 유행 때를 돌이켜 보면, 이 유행이 언제까지나 지속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지난 한 해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아이들을 돌보고 지켜내어 주신 부모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새로운 희망과 함께 시작하는 올해에는 부모님과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교육활동 침해 예방교육

I 추진 근거 및 배경

1. 근거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약칭: 교원지위법)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 「전라북도 교권보호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규칙」

2. 목적

- 학생 또는 학부모의 폭언·폭행·협박 등 교권 침해로 저하된 교권의 확립을 통하여 교원의 교육권 및 학생의 학습권 보장
- 교권침해 예방 및 교권침해 유형에 따른 대응 방안 마련
- 교권침해 학생에 대한 교육적 지도, 피해 교원에 대한 전문적 치유 지원을 통해 교권이 보호되는 학교 문화 조성

3. 필요성

- 학생 및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증가로 교권이 실추되고 교원들의 사기가 저하됨
- 교권침해 발생 시 교원의 교육권 및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됨
- 교권과 학생인권이 공존하는 인권우호적인 학교 문화 정착 필요
-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권침해 예방 및 대응 체계 필요

II 교권침해의 개념

1. 포괄적 정의 :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위한 교원의 교육권이 교육행정기관, 학교관리자, 동료교원, 학생, 학부모, 지역주민, 언론 등에 의해 부당하게 간섭받거나 침해되는 행위

가. 교육자로서의 교육할 권리 침해

- 교육과정 운영 및 수업 제약
- 관리자의 지도·감독권 남용
- 학생·학부모의 수업 방해

나. 전문직 종사자로서의 신분 침해

- 부당한 신분·인사 상 조치
- 학교안전사고 및 학교폭력 피해 배상 요구

다. 인간으로서의 기본권 침해

- 폭언·폭행·성폭력 등 신체적 위해
- 명예훼손·모욕·성희롱 등 인격권 침해
- 언론기관 등에 의한 사생활 침해

2. 법률적 정의

가. 「교원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5조

“학교의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폭행, 모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

나. 「교원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3

법 제15조제1항에서 “폭행, 모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형법」 제2편제25장(상해와 폭행의 죄), 제30장(협박의 죄), 제33장(명예에 관한 죄) 또는 제42장(손괴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에 따른 불법정보 유통 행위
4.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로서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